

의안번호	2207810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5. 3. 6.
추 계 번호	25A0570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54백만원, 2030년 54백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천만원(연평균 54백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경제안보관리협의회 (안 제18조의2)	54	54	54	54	54	270	5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(경제안보관리협의회)	○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둔다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8조의2 (경제안보관리협의회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민간위원 구성 등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“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”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8조(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) 제2항에 따르면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(기획재정부장관), 부위원장(산업통상자원부장관)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
 -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“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지원(3241-301)” 사업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민간위원은 15명, 회의 참석수당은 1인/회당 30만원, 연12회 개최로 편성됨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협의회의 민간위원 수에 1인당 회의비용(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비용)과 회의 개최 횟수를 곱하여 추계
 - (민간위원 수) 유사사례인 ‘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’ 구성 및 운영실적을 준용하여 15명으로 가정
 - (회의비용) 민간위원 1인/회당 회의참석수당 25만원과 회의자료비 등 회의 운영비 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1인/회당 30만원¹⁾이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(회의 개최 횟수) 연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,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억 7,000만원(연평균 5,400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경제안보관리협의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경제안보관리협의회 (안 제18조의2조)	54	54	54	54	54	270	5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림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림	02-6788-4652	jitae@assembly.go.kr